희망저축계좌 I
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○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+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♣ 지원예시

▷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⇒ **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***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**(내일키움장려금)**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**(내일키움수익금)**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**최대**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**(탈수급장려금)** 생계·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'22년 가입자 72만원)
- **(기타장려금)**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□ 가입 및 유지기준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가입 및 유지 기준(소득하한)	466,755	782,420	1,006,728	1,229,059	1,445,884	1,657,681	1,867,342
유지기준(소득상한)	4,194,701	4,194,701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
□ 해지요건

구 분	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해지	만기	- 3년간 통장유지 +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	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
	중도	- 만기 이전 탈수급 시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 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중위소득 100%) 초과 시 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	
일부 지급해지		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	• 만기성공금 지급 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

구 분		해지사유	지급액
환수해지	만기	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	중도	-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-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- 압류, 가압류 - 본인 요청 시	

□ 유의사항

○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
-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~현월 22일(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)

○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※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(~22년 7월)

○ 시스템 개편으로 '22년 4월~6월 각종 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됩니다.

○ 시스템 오픈한 후에 지급해지 신청, 적립중지 신청,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, 시스템 오픈 전에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※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

○ 용인지역자활센터(☎ 031-8005-8040)

○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(☎ 031-324-304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